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C <초등수학교육> 규정

2007. 6. 9. 제정

2011. 4. 2. 개정

2015. 11. 6. 개정

2017. 12. 8. 개정

2023. 1. 12. 개정

제 1조 (구성근거)

1.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C <초등수학교육> (이하 <초등수학교육>)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칙 제 5조(기구) 및 제 12조(이사의 구분과 직무)에 있다.
2. 이 규정은 2007년 6월 9일 개최된 총회의 의결에 따라 1992년 10월 10일 제정된 한국수학교육학회 편집위원회 시행 세칙을 토대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학회지 시리즈 C <초등수학교육>의 발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에 있다.

제 3조 (발행 예정일) <초등수학교육>은 일 년에 4회 발행한다.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제 4조 (운영방침) 본 위원회의 운영방침은 편집회의(이하 회의)에서 정한다.

제 5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4년제 대학 조교수 또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학교육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수학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다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수는 10~20명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정회원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혹은 박사 학위 소지 현장 교원 이상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전공안배: 아래의 각 전공 분야가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촉한다.
 - ① 초등수학교육 일반(초등수학교육 철학 및 인식론, 초등수학학습심리, 초등수학교육과정, 초등수학교수학습 방법, 초등수학교육평가, 초등수학교육공학, 초등수학영재교육, 초등수학교사 지식 및 교사교육, 초등수학 문제 해결, 초등수학교육 정책, 초등수학교육 국제 비교 연구, 기타)
 - ② 영역별 초등수학교육(초등대수, 초등기하, 초등해석, 초등통계, 기타)

3. 지역안배: 국내외 여러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 7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학회지 발행일 이전에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편집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 ③ 회장단이 요구하는 경우

제 8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회의의 성립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안건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 (안건 제안과 회의 참석) 학회의 모든 임원과 회원은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0조 (논문 투고의 규정) 시리즈 C의 투고규정은 간행물 <초등수학교육>의 안표지와 홈페이지에 명시한다.

제 11조 (논문심사)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학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익명으로 심사한다.

제 12조 (심사위원)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의 주관을 의뢰받은 각 편집위원이 논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한다.

제 13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논문심사의견서”에 명문화한다.

1. 연구논문 체계의 적절성 :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가 명확히 서술되고 논문의 내용 구성이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결과 및 분석, 결론, 참고문헌의 체계를 갖추고 투고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가?
2. 연구 주제의 적절성과 독창성 : 주제와 수학교육과의 관련성 여부 및 기존 연구논문과의 차별성 및 논문내용과 접근방법의 독창성이 있는가?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내용에 따른 가설이나 연구 방법이 적절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 연구결과 해석의 적절성 : 연구결과의 해석과 결론 도출의 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가?
5. 연구 내용전개의 체계성 : 내용 전개과정이 논리적이고 유기적이며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관성 있고 내용자체의 내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6. 연구결과와 기여도: 연구 결과가 중요하고 수학교육발전에 기여하는가?

제 14조 (논문 심사의 절차) 제출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고, 논문 심사의 절차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이 투고 되면 학술지 성격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접수된 논문을 전공, 지역, 업무량을 감안하여 담당 편집위원을 설정한다.
3.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되, 투고자 및 공저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배제한다.

4.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심사본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한 논문으로 진행하고,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논문 심사결과와 그 근거 및 수정 사항을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첨부하도록 하여 공정을 기한다.
5. 담당 편집위원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정표에 준하여 심사 결과 판정을 내리고,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투고자가 심사 결과 및 세부 심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심사위원의 정보를 삭제하여 진행한다.
6. 담당 편집위원의 심사결과 1차 판정 및 재심 진행 여부는 아래 심사표에 따른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편집위원 결과판정	비고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의 경우 C 재심 진행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재심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의뢰가 가지 않으며 편집위원이 수정논문을 받으면 2심 판정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의 경우 C 재심 진행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재심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의뢰가 가지 않으며 편집위원이 수정논문을 받으면 2심 판정.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B, C 재심 진행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재심	수정 논문이 등록되면 수정 후 재심 판정을 준 심사위원에게만 재심 의뢰가 감.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의 경우 C 재심 진행
수정후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재심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의뢰가 가지 않으며 편집위원이 수정논문을 받으면 2심 판정.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B, C 재심 진행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재심	수정 논문이 등록되면 수정 후 재심 판정을 준 심사위원에게만 재심 의뢰가 감.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A, B, C 재심 진행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재심	A, B 재심 진행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7. 편집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의 판정에 준하여 최종판정을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제 15조 (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 지시)

1. 담당 편집위원은 3명의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1차(또는 2차) 판정을 입력하면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심사서와 심사결과가 투고자에게 통보된다.
2.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심사서'는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논문투고시스템의 '답변서'를 이용하여 수정 결과 또는 투고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수정본 탑재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 16조 (게재 결정)

1.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저자에 관한 사항, 연구비 수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본을 제출하고,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는 편집한 출간 예정본을 투고자에게 확인한다.
2. 투고자는 확인한 최종본과 함께 저작권이양동의서, 게재료를 학회에 제출하면 투고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다.
3. 게재 호수와 게재 논문의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0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2007년 6월 10일 이전에 투고되어 2007년 6월 10일 이후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 3조 (개정 규정의 시행)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개정 규정의 시행)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 (개정 규정의 시행)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개정 규정의 시행)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